

무배당 (간편가입) 백만인을 위한
종신보험Plus(저해약환급금형)

메트라이프생명보험주식회사

사업방법서

(사업방법서 별지)

무배당 (간편가입) 백만인을 위한 종신보험Plus(저해약환급금형)

1. 보험종목의 명칭

- 무배당 백만인을 위한 종신보험Plus(저해약환급금형)
- 무배당 간편가입 백만인을 위한 종신보험Plus(저해약환급금형)

2.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및 보험료 납입주기

가.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및 가입나이

가입나이 범위								
가입유형	보험기간	보험기간 유형	납입기간	납입기간 유형	남자(세)		여자(세)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일반심사형	종신	종신	5	년	만15	70	만15	70
	종신	종신	7	년	만15	70	만15	70
	종신	종신	10	년	만15	70	만15	70
	종신	종신	15	년	만15	65	만15	65
	종신	종신	20	년	만15	60	만15	60
간편심사형	종신	종신	5	년	30	75	30	75
	종신	종신	7	년	30	73	30	73
	종신	종신	10	년	30	70	30	70
	종신	종신	15	년	30	65	30	65
	종신	종신	20	년	30	60	30	60

나. 보험료 납입주기 : 월납

3. 의무가입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4. 배당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5. 보험료에 관한 사항

가. 기본보험료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매월 납입하기로 한 월납보험료로서, 이 보험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된 보험료를 말합니다.

6. 보험료 선납에 관한 사항

- 가. 보험료의 선납은 당월분을 포함하여 최대 12개월분 이하의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에 한하여 가능하며, 기본보험료의 배수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 나. 기본보험료를 선납할 때의 할인은 3개월분 이상의 보험료를 선납할 때에 한하여 적용하며, 선납할 때에 적용하는 할인율은 이 계약 체결시점의 평균공시이율이 아닌 “선납 신청시점의 평균공시이율”로 계산합니다. 선납 신청시점의 평균공시이율은 계약체결시점과 달리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보험료의 할인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8.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관한 사항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9.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시 연체보험료에 대한 연체이자율은 연체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1%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합니다.

10.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11. 보험계약대출에 관한 사항

- 가.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단,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나. 계약자는 '가'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 다. 회사는 약관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합니다.
- 라.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12. 해약환급금 지급에 관한 사항

- 가. 저해약환급금형은 계약일로부터 보험료 납입기간 완료 이전까지는 해약환급금이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는 동일한 보장 내용의 상품”(이하 “유해약환급금형”이라 한다.) 대비 적은 대신, 유해약환급금형보다 적은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기간 완료 이후부터는 유해약환급금형과 해약환급금이 같습니다.

나. “가”에서 해약환급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유해약환급금형의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고 계산합니다.

다. 저해약환급금형의 유해약환급금형 대비 이 계약의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에 유지보너스가 제공된 경우 저해약환급금형과 유해약환급금형의 해약환급금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경과기간	유해약환급금형 대비 해약환급금 비율
계약일 이후 ~ 「납입기간」 이전	50%
「납입기간」 경과 이후 ~	100%

【해약환급금 지급비율 예시】		
2026년 1월 1일 계약, 납입기간 20년납, 월납		
기준		유해약환급금형 대비 해약환급금 비율
계약일 이후 ~ 「납입기간」 이전	2026년 1월 1일부터 2045년 12월 31일까지	50%
“납입기간” 경과 이후~	2046년 1월 1일 이후	100%

라. 회사는 저해약환급금형 및 유해약환급금형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환급률 포함)의 수준을 비교하여 안내합니다.

마. 회사는 저해약환급금형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해약환급금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고 (별첨 제1호)에 따른 별도의 확인서를 받습니다.

13. 유지보너스에 관한 사항

가.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고 유지보너스 발생일에 유효한 계약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한 유지보너스 금액을 계약자적립액에 가산합니다.

① 유지보너스 금액:

주계약 기본보험료 × 12 × 보험료 납입기간(년수) × 유지보너스지급률

② 유지보너스 발생일:

보험료 납입기간	유지보너스 발생일
5년납	계약일로부터 5년 경과기간 후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 계약일로부터 10년 경과기간 후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
7년납	계약일로부터 7년 경과기간 후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 계약일로부터 10년 경과기간 후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
10년납	계약일로부터 10년 경과기간 후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
15년납	계약일로부터 15년 경과기간 후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
20년납	계약일로부터 20년 경과기간 후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

③ 유지보너스 지급률:

- 일반심사형

보험료 납입기간	유지보너스 지급률	
	5년납	5년경과
	10년경과	11.8%
7년납	7년경과	18.2%
	10년경과	13.0%
10년납	10년경과	32.1%
15년납	15년경과	32.1%
20년납	20년경과	32.1%

- 간편심사형

보험료 납입기간	유지보너스 지급률	
	5년납	5년경과
10년경과		8.8%
7년납	7년경과	18.2%
	10년경과	10.0%
10년납	10년경과	29.1%
15년납	15년경과	29.1%
20년납	20년경과	29.1%

나. 유지보너스 발생후적립액 : 유지보너스 발생일에 제공된 유지보너스금액은 ‘보험료 및 해약 환급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적립하며, 이를 유지보너스 발생후적립액이라 합니다.

다.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의 변경, 일부 해지 등의 이유로 주계약 보험가입금액이 감소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부터 변경된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및 주계약 기본보험료를 기준으로 유지

보너스 및 유지보너스 발생후적립액을 적용합니다.

14. 헬스케어서비스 부가에 관한 사항

- 가. 본 서비스는 회사가 정한 서비스 부가 기준을 충족하고 서비스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한 피보험자 등에 제공됩니다. 다만, 보험가입금액의 감액 혹은 보험종목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 등의 사유로 회사가 정한 서비스 부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본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나. 본 서비스는 회사의 제휴업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제휴업체가 집니다.
- 다. 본 서비스는 대내외환경 변화로 인해 향후 서비스 내용 및 제공방법이 변경되거나 중지될 수도 있습니다.

15. 사망보험금의 생활자금 선지급에 관한 사항

가. 사망보험금의 생활자금 선지급 관련 용어의 정의

- (1) 생활자금 개시일은 계약자가 선택한 “생활자금 개시나이” 세 연계약해당일로 합니다.
- (2) 생활자금 지급기간은 계약자가 선택한 생활자금 지급기간으로 생활자금 개시일로부터 5년, 10년, 15년, 20년 또는 25년 중 선택한 기간으로 합니다. 생활자금 개시일에 생활자금 선지급이 시작된 이후에는 약관 제46조(사망보험금의 생활자금 선지급금 지급에 관한 사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생활자금 선지급의 중지 또는 재신청이 있더라도 생활자금 개시일로부터 기산된 생활자금 지급기간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 (3) 생활자금 선지급금은 이 계약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생활자금 개시일 당시 보험가입금액에 아래의 비율을 곱한 금액만큼 매년 감액한 후, 감액한 부분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말합니다.
 - ① 생활자금 지급기간이 5년일 경우 : 18%
 - ② 생활자금 지급기간이 10년일 경우 : 9%
 - ③ 생활자금 지급기간이 15년일 경우 : 6%
 - ④ 생활자금 지급기간이 20년일 경우 : 4.5%
 - ⑤ 생활자금 지급기간이 25년일 경우 : 3.6%다만, 상기 방법에 따라 계산된 생활자금 선지급금이 생활자금 선지급일 당시 해약환급금 (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제외) 보다 클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되지 않고 해당 생활자금 선지급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이후 생활자금 선지급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 (4) 생활자금 선지급일은 생활자금 개시일 이후 1년마다 돌아오는 매년의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 년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생활자금 선지급일로 합니다.

나. 사망보험금의 생활자금 선지급 신청에 관한 사항

(1)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고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된 이후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사망보험금 생활자금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① 피보험자의 나이가 55세 이상 100세 이하인 경우
- ② 납입기간이 10년납 이상인 계약

다만, 사망보험금 생활자금 선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도 생활자금 개시일 당일에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생활자금 선지급이 개시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생활자금 선지급은 자동으로 취소되고 생활자금 선지급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① 보험료 납입기간이 전부 경과한 이후 5년이 지난 계약 (납입이 완료된 계약에 한함)
- ②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의 잔액이 없는 계약

(2) 계약자는 보험료의 납입이 완료된 이후부터 생활자금 개시일 1개월 이전까지 생활자금 선지급을 취소하거나 생활자금 개시나이 또는 생활자금 지급기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 사망보험금의 생활자금 선지급금 지급에 관한 사항

(1) 생활자금 선지급금은 생활자금 개시일을 포함하여 생활자금 지급기간 동안 매년 생활자금 선지급일에 계약자에게 지급됩니다. 생활자금 선지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약관 별표 2(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와 같이 계산합니다.

(2) 생활자금 지급기간 중 계약자는 생활자금 선지급의 중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후 도래하는 생활자금 선지급일부터는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지 않고, 생활자금 선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2)에 따라 생활자금 선지급의 중지를 신청한 이후 향후 도래하는 생활자금 선지급일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해, 계약자는 생활자금 선지급을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활자금 선지급 재신청이 있을 경우, 재신청일로부터 처음으로 도래하는 생활자금 선지급일에 생활자금 선지급이 이루어지며, 생활자금이 선지급되는 기간은 생활자금 선지급이 중지된 기간만큼 연장되지 않고, 약관 제45조(사망보험금의 생활자금 선지급 신청에 관한 사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생활자금 개시일에 적용된 생활자금 지급기간과 동일합니다. 또한 생활자금 선지급금은 생활자금 개시일에 최초로 생활자금 선지급금을 계산할 때와 동일하게 계산됩니다.

(4) 생활자금 지급기간 중 아래의 사항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생활자금 선지급은 종료됩니다.

- ① 주계약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② 주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사유에 의하여 계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게 된 경우

(5) 생활자금 선지급금 지급이 시작된 이후,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지급된 생활자금 선지급금은 회사가 지급할 사망보험금에서 해당 생활자금 선지급금을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6) 계약자는 생활자금 지급기간 동안 아래의 사항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① 약관 제21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 제1호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의 변경
 - ② “11. 보험계약대출에 관한 사항”에 의한 보험계약대출
 - ③ 선지급서비스특약에 의한 사망보험금의 선지급
 - ④ 주계약에 부가된 제도성특약에 따른 연금전환 및 저축전환
- (7) (6)에도 불구하고 (2)에 따라 생활자금 선지급을 중지한 경우에는 (6)의 ①~③의 사항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신청한 경우 (3)에 따른 생활자금 선지급 재신청은 불가합니다.
- (8) (1)에 따라 생활자금 선지급금이 지급되어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약관 제21조(계약내용의 변경 등)의 제1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합니다.
- (9) 생활자금 선지급금을 나누어 지급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생활자금 선지급금을 매월, 3개월, 6개월로 나누어 지급하며 평균공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16. 기타

가. 연금전환에 관한 사항

- ① 이 보험의 연금전환은 「무배당 신연금전환특약_(가입시점)」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이하 “연금전환”은 「무배당 신연금전환특약_(가입시점)」의 적용을 의미합니다.)
- ② 연금전환은 주보험을 가입할 때의 기초서류(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를 적용합니다. 다만, 장기간병자 관련 위험률은 연금 전환 당시에 회사가 적용하고 있는 위험률을 적용합니다.
- ③ 연금전환은 아래의 조건을 만족한 계약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계약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계약(다만, 일시납의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5년이 경과한 계약)
 - 전환 신청 당시의 특약을 제외한 주계약의 해약환급금이 1,000만원 이상인 계약
- ④ 연금전환은 전환 신청 당시 피보험자의 나이가 30세 이상 80세 이하인 경우 가능합니다. 다만, 연금으로 전환할 때 선택한 연금지급형태에 따라 전환 가능나이 및 연금지급개시 나이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⑤ 「무배당 신연금전환특약_(가입시점)」으로의 전환은 주계약 보험기간 중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⑥ 연금지급형태 중 장기간병연금형을 선택한 경우 연금지급개시일은 연금전환일로 합니다.

나. 저축전환에 관한 사항

- ① 이 보험의 저축전환은 「무배당 달러저축전환특약_(전환시점)」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이하 “저축전환”은 「무배당 달러저축전환특약_(전환시점)」의 적용을 의미합니다.)
- ② 계약자가 이 보험을 저축보험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신청한 경우, 계약의 전환은 주계약의 해약환급금을 달러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 경우 환산기준일 및 기준환

율은 원화환산납입서비스특약 및 원화환산지급서비스특약에 따릅니다.

③ 저축전환은 저축보험으로 전환시의 기초서류(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를 적용합니다.

④ 저축전환은 전환 전 계약을 7년 이상 정상 유지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단, 특약(제도성 특약 제외)을 부가한 경우, 전환금액은 전환시점 당시 주계약 해약환급금의 90%를 초과할 수 없으며, 특약(제도성 특약 제외)을 부가하지 않은 경우, 전환금액은 전환시점 당시 전체 주계약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저축전환의 가입금액 한도 등을 별도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다. 회사는 상품명칭 앞뒤에 원하는 이름이나 판매경로(단, 보험대리점의 명칭은 제외)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용어를 덧붙여 안내자료 및 보험증권 등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라. 보험기간, 납입주기, 납입기간 외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관련 사항은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마. 이 상품의 판매채널은 대면채널로 합니다.

바.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 및 약관에서 정하지 않는 자산운용 관련 용어 및 사항은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만, 자산운용 관련 용어 및 사항은 관련 법규 등이 제정 또는 개정될 경우 변동될 수 있습니다.

사. 이 상품의 간편심사형은 “간편심사” 상품으로 유병력자 또는 고연령자 등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① 간편심사란 의적결함 및 연령 제한으로 인하여 보험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유병력자나 고연령자 등의 계약심사 및 건강검진의 부담을 줄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표준체에 비하여 간소화된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별첨 제3호)을 활용하여 계약심사 과정을 간소화함을 의미하며, 간소화된 계약전 알릴의무 항목 이외의 병력 정보는 계약심사 과정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② 피보험자가 표준체에 해당하는 계약전 알릴의무 항목을 통하여 보험가입여부에 대한 의적 심사를 거쳐 가입 가능한 일반심사보험이 존재하는 경우, 회사는 간편심사상품과 일반심사보험의 보험료 수준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이에 대한 계약자 확인(별첨 제2호 “간편심사 상품에 대한 계약자 확인서 서식” 참조)을 받습니다.

③ 본 계약의 동일한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계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의 일반심사 대상인 보장성보험(저축성보험, 연금보험, 보험기간 1년 이하인 단기보험 제외)에 청약하고 회사의 심사를 통해 해당 보험에 가입한 경우로서, 계약자가 본 계약의 무효를 원하면 회사는 본 계약을 무효로 하고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단, 본 계약의 보험금이 지급되거나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청구서류가 접수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④ ③의 각 용어는 보험업감독규정의 정의를 따르며, “보장성보험”이란 기준연령 요건에서 생존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을 말하고

"저축성보험"이란 보장성보험을 제외한 보험으로서 생존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을 의미합니다. 또한 "연금보험"이란 일정연령 이후에 생존하는 경우 연금을 주된 보장으로 하는 보험을 의미합니다.

- ⑤ 간편심사상품의 청약 시, 동일한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청약시점 직전 3개월 이내에 당사 일반심사보험(저축성보험, 연금보험, 보험기간 1년 이하인 단기보험 제외)을 가입한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 표준체 여부 재심사를 통해 일반가입형으로 가입하도록 안내합니다. 다만, 동일한 담보의 일반가입형 상품이 없을 경우, 가장 유사한 상품을 기준으로 합니다.

(별첨 제1호)

“저해약환급금형 가입에 대한 계약자 확인서” 서식

"보험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해서 아래 [필수비교 확인사항]은 계약 체결 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필수비교 확인사항]

※기준: 남자 40세, 20년납, 월납,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천만원

■납입보험료 비교 (단위: 원)

저해약환급금형	유해약환급금형

■해약환급금 사망보험금 비교 (단위: 만원)

경과기간	저해약환급금형			유해약환급금형		
	해약환급금	사망보험금	환급률	해약환급금	사망보험금	환급률
1년 [:]						

* 상기 환급률은 기납입보험료 대비 환급률입니다.
 * 유해약환급금형은 해지율을 제외한 보험료 산출 기초율과 보장내용이 동일한 상품을 말합니다. 다만, 유해약환급금형은 저해약환급금형의 보험료와 해약환급금 비교를 위한 상품으로 별도로 가입하실 수 없습니다.

※ 아래 얇고 크게 밀줄친 내용은 보험계약자가 직접 자필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은(는) 위 내용에 대해 비교·확인하였습니다.
- 이 보험은 “저해약환급금형” 상품이며, 보장성 보험으로 이 보험을 저축목적으로 가입할 경우 다른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본인은 보험기간 중 중도해지 시 “유해약환급금형” 대비 해약환급금이 적은 저해약환급금형을 선택하였습니다.
- 상기 비교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모집자 확인]

보험설계사 _____ 은(는) 위 내용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였습니다.

20년 월 일 보험설계사 _____ (인/서명)

[보험계약자 확인]

보험설계사 _____ (으)로부터 위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다.

20 년 월 일 보험계약자 _____ (인/서명)

(별첨 제2호)

간편심사 상품에 대한 계약자 확인서 서식

[간편심사 관련]

1. 이 상품은 “간편심사” 상품으로 유병력자 또는 연령제한 등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2. 이 상품은 "간편심사" 상품으로 일반심사보험 대비 보험료가 다소 높습니다. 의사의 건강검진을 받거나 일반계약심사를 할 경우 이 보험보다 저렴한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심사보험의 경우 건강상태나 가입나이에 따라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보장하는 담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위의 일반심사보험은 아래 “일반심사보험과의 보험료비교(예시)”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심사보험과의 보험료 비교(예시)]

* 아래는 보험료 비교를 위한 예시이며, 실제 일반심사보험으로는 계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상품구분	간편심사보험			일반심사보험		
계약 승낙 여부	일반 상품 대비 질문항목(고지)을 간소화하여, 지병이나 기왕력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및 직업에 따라서 청약에 대한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예시	나이	남자	여자	나이	남자	여자
	40세	000 원	000 원	40세	000 원	000 원
	50세	000 원	000 원	50세	000 원	000 원
	60세	000 원	000 원	60세	000 원	000 원
	※ 기준 :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납입기간, 납입주기, 최초계약			※ 기준 :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납입기간, 납입주기, 최초계약		

(주) 1. 비교 대상 상품은 회사에서 판매 중인 유사한 상품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에 대하여 모집자는 보험계약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였고, 보험계약자는 설명 받은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아래 옅고 크게 밑줄친 내용에 보험설계사 및 보험계약자가 직접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인) 하시기 바랍니다.]

[모집자 확인]

보험설계사 _____은(는) 위 내용에 대하여 보험계약자 _____님에게 설명하고, 이 확인서를 교부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보험설계사

(인/서명)

[보험계약자 확인]

보험설계사 _____(으)로부터 간편심사 상품에 대한 계약자 확인서를 교부받고, 위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20 년 월 일

보험계약자 (인/서명)

친권자 (인/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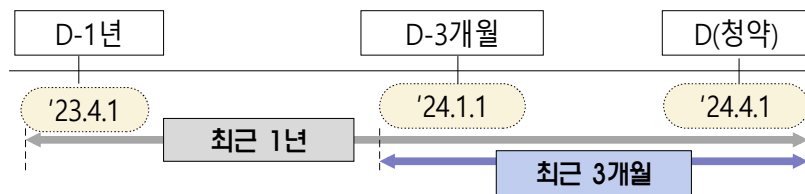
(별첨 제3호)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

- ※ 피보험자에 관한 다음 사항은 회사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심사하고 인수하는데 필요한 자료이므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아래 질문들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직접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만약 아래 질문들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특히 질문 1번 ~ 6번에 대하여 알린 내용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보험약관에 따라 이 보험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고,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더라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등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반면, 보험설계사 등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하는 등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사항”이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보험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인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합니다.

- ※ 이 청약서에서 ‘최근 3개월 이내(2,5년 이내)’는 청약일의 3개월 전일(2,5년 전일)부터 청약일까지를 의미합니다.(예를 들어 청약일이 4월 1일인 경우 ‘최근 3개월 이내’는 1월 1일부터 4월 1일까지)



- ※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을 부활하는 경우, 해지일 이후로부터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기간과 각 질문별 알릴의무 기간 중 짧은 기간을 알릴의무 기간으로 합니다.

건강 상태

1.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건강검진 포함)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 ① 입원 필요 소견 ② 수술 필요 소견 ③ 추가검사(재검사) 필요 소견 ④ 질병확정진단 ⑤ 질병의 심소견

※ 필요소견 및 질병의심소견이란 의사가 진단서나 소견서 또는 진료의뢰서 등을 포함하여 서면

하는 경우 기재

본 질문에 ‘아니오’ 로 기재하고 보험계약 체결 후 이륜자동차* 또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를 포함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사용하게 된 사실을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등 알릴 의무 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직접 기재하여야 하는 문구

7. 월평균소득(계약자 기준) : ()만원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었고,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청약하였으며, 이 보험과 관련하여 의사에게 질병 등의 건강상태에 대해 조회 및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메트라이프생명보험주식회사 귀중

계약자 성명 (인)

피보험자 성명 (인)

법정대리인(친권자) 관계() 성명 (인)

법정대리인(친권자) 관계() 성명 (인)

<법정대리인(친권자) 1인이 서명한 경우>

본인은 다른 법정대리인(친권자) 1인과 합의하에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합니다. (인)